공표주의와 기밀주의

서정우
연세대 신방과 교수

I. 공표와 기밀의 배경

인간에게는 표현본능과 비밀본능이 동시에 존재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표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에게만 숨겨두려는 욕구를 또한 가지고 있다. 인간의 표현본능은 공표주의의 배경이 되고, 인간의 비밀본능은 기밀주의의 배경이 된다 공표주의란 공표를 우선하는 입장을 의미하고, 기밀주의란 기밀을 우선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인간의 이러한 야누스적인 본성은 대부분의 경우 인간속에 조화롭게 공존하지만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갈등하는 국면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인간의 표현본능과 비밀본능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익이나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경쟁적 갈등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표현본능은 상대적으로 자연스런 상태이고 개방된 상태인데 반하여 비밀본능은 억압된 상태이고 폐쇄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의 생물적 체계(human biological system)로서 자연상태와 개방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인간은 억압되고 폐쇄된 상태인 비밀본능보다는 자연스럽고 공개된 상태인 표현본능을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표현본능은 인간의 생물적 체계를 유지 ·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더욱 요구되는 상태라는 뜻이다. 인간본성의 이러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조직이나 국가의 경우에 확대 · 적용된다. 조직이나 국가에도 공표주의와 기밀주의가 공존한다. 공표주의와 기밀주의는 조직이나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이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경쟁적 갈등관계를 표출하게 된다. 그러나 조직이나 국가 역시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직체계와 국가체계의 유지 · 발전을 위해서 기밀주의보다는 공표주의를 우선하게 된다.

Ⅱ. 공표주의와 기밀주의의 갈등

공표주의와 기밀주의의 갈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간의 관계, 즉 언론과 정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한 방법이 된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공표주의의 입장에 서게 되고, 정부는 기밀주의의 입장에 서게 된다. 언론의 공표주의와 정부의 기밀주의간에 존재하는 갈등국면을 요약 ·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이념적 갈등

언론은 공표주의의 이념적 원류를 자유주의이론에서 찾는데 반하여 정부는 기밀주의의 이념적 원류를 권위주의이론에서 찾는다. 자유주의이론은 인간과 국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적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공표주의를 우선하게 되고, 권위주의는 인간과 국민보다는 국가를 목적적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기밀주의의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다. 공표주의를 우선하는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는데 반하여 기밀주의를 우선하는 정부는 「국민의 알 필요」를 강조하게 된다. 언론은 공표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사부이론, 천적이론, 견제이론, 목택이론, 환경감시이론, 자동조정이론, 그리고 사상의 공개시장이론 등을 내세우는 데 반하여 정부는 기밀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하부구조이론, 동반자이론, 동원이론, 도구이론, 발전언론이론, 그리고 사상의 교통정리이론 등을 내세운다.

2. 직업규범적 갈등

공표주의를 우선하는 언론의 경우 최대의 직업규범은 「뉴스는 최대의 가치이다」라는 규범인데 반하여 기밀주의를 우선하는 정부의 경우 최대의 직업규범은 「기밀보호는 최선의 안전책이다」라는 규범이 된다. 따라서 뉴스의 전달에다 최대의 직업규범적 가치를 부여하는 언론과 기밀보호에다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는 정부간에는 필연적인 갈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공표주의를 우선하는 언론은 환경감시와 비판을 주된 직업규범으로 생각하는데 반하여 기밀주의를 우선하는 정부는 효율성을 주된 직업규범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다. 언론의 비판주의와 정부의 효율지상주의 간에도 갈등이 기본적으로 내재하게 된다.

3. 상호인식적 갈등

공표주의를 우선하는 언론과 기밀주의를 우선하는 정부간에는 상호인식차원에서 갈등이 존재한다. 언론과 정부는 국가발전이라는 국가목적에 있어서는 갈등적 관계에 있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언론이나 정부는 모두가 다 국가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적 기관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언론과 정부간에 존재하는 갈등은 목적에 있어서의 갈등이 아니다. 언론과 정부간에 갈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의 갈등이 된다. 언론은 국가발전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자신의 위상과 기능을 정부에 대한 환경감시와 비판의 수행자, 국가이익의 대변자, 그리고 정부정책결정에의 참여자로 인식하는 데 반하여 정부는 국가발전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언론의 위상과 기능을 정책의 동반자, 국가이익의 전달자, 그리고 정책의 홍보자로 인식한다.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한 자신의 위상과 기능을 국가이익의 대변자, 정책의 결정자 등으로 인식하는데 반하여 언론은 정부의 위상과 기능을 환경감시의 대상자, 국민을 위한 공복 등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언론과 정부 간에는 상호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그들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조(self-image)과 타상(other-image)간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갈등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4. 취재기술상의 갈등

취재기자는 정부관료를 향해서 「정부가 그렇게 기밀보호에 급급하고서 어떻게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하면 정부관료는 취재기자를 향해서 「언론이 그렇게 포로주의에 급급하니 어떻게 효과적인 정부정책의 수행이 가능한가」라고 반박하게 된다. 취재기자는 「감추니까 들추지 않느냐」의 입장을 고수하는데 반하여 정부관료는 「들추니까 감추지 않느냐」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언론과 정부간의 직무수행의 기술적 갈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간에 본질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Ⅲ. 상호갈등의 결과적 현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표주의와 기밀주의는 목적에 있어서의 갈등관계가 아니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차원의 갈등관계가 된다. 공표주의를 우선하는 언론과 기밀주의를 우선하는 정부간에 존재하는 갈등 역시 목적적 갈등이 아니고 방법적 갈등임에 틀림없다. 공표주의와 기밀주의 간에 존재하는 갈등이 수단적 차원의 갈등이지만 그러한 갈등은 이념적 차원에서부터 기술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면서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공표주의와 기밀주의간에 존재하는 갈등이 국가발전과 관련해서 야기하는 첫번째

결과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보의 상실현상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공표주의와 기밀주의가 갈등하게 되면 국가발전을 위한 귀중한 정보가 그 와중에서 상실되고, 왜곡되고, 편향되게 된다는 뜻이다. 정보는 국가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며 자원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언론은 언론대로 공표주의만을 고집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기밀주의만을 고집하게 될 경우 정보상실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두번째 야기되는 현상은 소수인의 영향력이 이상적으로 증대되는 국면이다. 공표주의와 기밀주의가 갈등하게 되면 언론에 있어서나 정부에 있어서나 소수인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는 현상이 야기 된다. 공표주의와 기밀주의가 예민하게 갈등하면 권력이나 정보가 소수인에 의해서 독점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권력이나 정보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소수인의 영향력 행사로 발전하게 된다. 원인은 상이하지만 미국사회의 경우 헨러 키신저의 외교정책 수행상 영향력 독점현상이나「뉴욕타임즈」의 제임스 레스턴 기자의 영향력 독점현상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민주사회는 여론에 의해서 지배되며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따라서 소수에 의한 영향력의 과다행사는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말하기 어렵다. 세번째 야기되는 현상은 제도화와 전문화의상실이 된다. 성숙되고 민주화된 사회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 지기보다는 제도에 의해서 다스려짐이 바람직스럽다. 그것은 전문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언론과 정부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전문인에 의해서 운영될 때 국가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이 경우 전문성이란 정보관리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관리의 도덕적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포주의와 기밀주의간의 갈등은 정보를 관리하는 언론과 정부의, 제도화와 전문화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제도화와 전문화는 공표주의와 기밀주의간의 갈등관계를 조화의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가 된다는 뜻이다. 네 번째 야기되는 현상은 공표주의를 우선하는 언론과 기밀주의를 우선하는 정부의 대국민 공신력의 추락 국면이 된다. 언론이 정보를 책임있게 공표하고 정부가 기밀을 책임있게 관리할 때 국민은 그들 기관에게 국민적 신뢰를 주는 것이다. 공표주의란 공표를 우선하는 입장을 의미하지 무슨 정보든지 국민에게 공표해야 된다는 입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기밀주의란 기밀을 우선하는 입장을 의미하지 무슨 정보든지 기밀로서 보호하고 음폐해야 된다는 입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책임한 공표주의는 언론의 대국민 공신력을 추락시키는데 기여하고, 무책임한 기밀주의는 정부의 대국민공신력을 추락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합리적인 공표주의와 기밀주의 만이 언론과 정부의 신뢰를 제고하는 지름길이 된다. 한 때 우리사회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게 유통되어서 정보의 빈혈증을 앓았고, 현재에는 정보가 너무 과다하게 유통되어서 정보의 뇌졸증을 앓고 있다는 비난이 존재한다. 정보는 물과 같아서 너무 부족하면 가뭄의 재앙이 발생하고, 너무 과다하면 홍수 재앙이 발생한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는 그 사회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한 정보유통의 적정선이 존재한다. 현대사회에서 정보유통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두말할 것 없이 언론과 정부가 된다. 언론은 정보유통을 우선하는 입장을 취하고, 정부는 정보통제의 입장을 일반적으로 취하게 된다. 언론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사회불안이 싹트게 된다. 현재 우리사회에 불신풍토가 만연되어가고 있다 믿음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말에서부터 연유된다는 뜻이다.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는 국민이 많지 않다. 그리고 언론의 말을 믿는 국민 또한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의 근저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언론의 정보관리 능력의 부재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무책임한 공표주의가 언론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고, 무책임한 기밀주의가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언론과 정부의 대국민적 공신력이 추락되면서 사회가 불신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Ⅳ. 갈등의 조화기준

공표주의와 기밀주의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룩하기 위한 기준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다. 그들은 (1) 법적인 기준, (2) 윤리적 기준, (3) 판례적 기준, 그리고 (4) 학문적 기준이 된다.

1. 법적 기준

언론의 공표주의는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이고 권리이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다른 권리와의 관계속에서 강조되는 상대적 권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 21 조 제 1 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언론의 공표주의 입장을 분명히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 21 조 제 4 항에서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공표주의의 한계를 또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37 조 제 1 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공표주의의 입장을 보장하는 반면 제 37 조 제 2 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 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공표주의의 한계를 법으로써 제한하고 있다. 언론의 공표주의가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제한될 수 있는 법적차원으로서는 (1) 개인권과의 갈등, (2) 사회권과의 갈등, 그리고 (3) 국가권과의 갈등이 존재한다. 개인권과의 갈등은 다시 (1) 명예권의 보호, (2)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3)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의 보호, (4) 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5) 소년범의 보호 등으로 분류되고, 사회 권과의 갈등은 (1) 일반사회질서의 보호, (2) 선거질서의 보호, (3) 법정질서의 보호, (4) 의회질서의 보호, 그리고 (5) 미풍양속의 보호 등으로 분류된다. 국가권과의 갈등은 (1) 국가안전의 보장, (2) 군사기밀의 보호 등으로 분류된다.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실정법으로서는 형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계엄법 등이 있고, 군사기밀의 보호와 관련되는 실정법으로는 국가안전기획부법, 군사기밀보호법, 임시우편단속법, 세관법, 내란이나 외란에 관한 형법규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들은

공표주의가 제한될 수 있는 국가법익차원의 제한상황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사회권과의 갈등 가운데서 일반사회질서의 보호와 관련되는 실정법으로서는 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아동복리법, 미성년자보호법, 소년법, 가사심판법, 경범죄처별법, 도로교통법 등이 있고, 선거질서의 보호와 관련된 실정법으로서는 국민투표법,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등이 있다. 법정질서의 보호와 관련되는 실정법으로서는 법원조직법, 법정에서의 방청·촬영 등에 관한 규제 등이 있고, 의회질서의 보호와 관련되는 실정법으로서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정당법 등이 존재한다. 미풍양속의 보호와 관련되는 실정법으로서는 외설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공연법, 영화법, 그리고 음반에 관한 법률의 해당조항 등이 된다.

2. 윤리적 기준

언론의 공표주의를 제한하는 기준들은 신문윤리강령, 방송심의규정, 간행을 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공연윤리강령 등에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윤리강령은 윤리기준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도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평가된다. 언론윤리강령 가운데 대표적 인 윤리 강령은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신문윤리강령 가운데 제 5 장 「타인의 명예와 자유」는 신문의 윤리와 관련하여 「신문은 특히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이 아닌 호기심 또는 악의에서 개인의 권리나 감정을 침해할 수 없다. 또 신문은 스스로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타인이 주장하는 자유를 인정하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천명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타인의 명예와 자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아래 5 가지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고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 및 평론을 해서는 안된다. 공직자 또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격이나 저열한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2)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한, 개인의사생활을 보도 또는 평론해서는 안된다. 공공의 이익과 대중의 호기심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3) 형사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기소된 후는 경칭을 생각해도 무방하다. (4) 미성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및 봉욕한 부여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5) 타인이 주장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록 자기의 관찰 또는 주장과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이를 편집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비판을 받은 자에게는 지면에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판례의 기준

판례의 기준이란 공표주의를 제한하는 법원의 판결이 제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미국의 대법원이 제시한 대표적인 판례기준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사악한 경향원칙(Bad Tendency Test)이 원칙은 1925 년 Gitlowv New York 사건 2)의 판결에서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은 규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은 「불이 붙기 전에 불씨를 꺼야 한다」는 판례적 입장으로서 표현이란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미칠 본질적 해악의 경향만으로도 규제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2)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and Present Danger Test)이 원칙은 1919 년 Schenck v. U. S. 사건 3)에서 채택된 판결내용으로서 「사용된 표현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킬 상황과 성격을 지녀 본질적 해악을 초래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에 따라 표현이 규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표현의 자유가 다른 법익과 갈등할 경우 그러한 법익에 미치는 해악이 현재 존재하고, 즉각적이며, 또한 명백하지 않는 한 규제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원칙은 용납될 수 있는 표현의 한계를 행동직전까지 확대시킴으로써 보호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3) 이익교량의 원칙 (Ad Hoc Balancing Test)이 원칙은 1950 년 Douds v. U S. 사건 4)에서 채택된 판결 내용으로서 언론자유가 추구하는 이익과 규제가 추구하는 이익이 갈등할 때 그들의 이익들을 비교형량하여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례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언론자유의 영역을 확장한 기준으로서 높게 평가되나 너무 광범위하고, 정의하기 곤란하고, 그리고 어떤 들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법치(Rule of law)개념으로는 적합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학문적 기준

학문적 기준이란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적 원칙을 의미한다. 학문적 원칙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에머슨의 명제가 있다.5) 이 명제의 핵심은 표현과 행동을 구별하는 데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표현은 가능한 한 자유로워야 하나 그 표현이 행동화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 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 학문적 기준 역시 언론자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으나 표현과 행동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명제로서는 가능하나 법적 기준으로서는 적합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V. 갈등해소의 방향

공표주의와 기밀주의간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은 인식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두 가지 차원에 존재한다.

1. 인식적 차원

첫째, 언론과 정부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정보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보사회의 도내는 언론과 정부에게 그러한 인식을 더욱 강요하게 되리라 평가된다. 둘째, 언론과 정부는 공표주의와 기밀주의간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공표주의와 기밀주의는 결코 흑백이나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균형의 개념이며 정도의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언론과 정부는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언론이나 정부의 능력에 따라서 공표주의가 기밀주의 보다도 혹은 기밀주의가 공포주의보다도 더욱 우선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셋째, 언론과 정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이익과 정부이익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언론과 정부는 진실에 대한 충성만이 결국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다섯째, 언론과 정부는 일반적인 공표는 일반적인 기밀보다는 일반적인 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2. 제도적 차원

첫째, 언론과 정부는 전문화의 과제를 제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화란 정보관리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관리의 윤리적 · 도덕적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언론과 정부는 공표주의와 기밀주의간의 견제와 균형을 심의하고 평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 이 협의체는 언론인, 정부관리, 전문학자, 그리고 정보관계자 등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주

1) Francis E. Rourke, 「secrecy and Publicity; Dilemmas of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61, James Reston, 「The Artilery of the Press: Its Influence on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 Row, 1967; James R. Wigglns, 「Freedom or Secre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Bernard Cohen, 「The Press and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등을 참조했음

2) Gitlow v New York(268 U.S. 652, 1925) .

3) Schenck v. U. S. (249 U.S. 47, 1919).

4) Douds v. U.S. (339 U.S. 394, 1950).5) Thomas 1. Emers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New York: Random House, 1966, pp. 63-101

□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대학원(신문학 박사)

□ 저술: 「신문학이론」 (공저), 「언론통제이론」 (공저), 「국제 커뮤니케이션론」 외

□ 현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 ABC 협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